

「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」 제출 안내

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(개별기업보고서, 통합기업보고서, 국가별보고서) 제출대상
에 해당하는 경우 **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**
에 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(예 : 2020.12월말 법인은 2021.12.31.까지 제출)
다음과 같이 제출대상 및 제출방법 등을 안내해드리오니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
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§16, 동법시행령 §33~35)

제출대상

- (개별·통합기업보고서) ①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1천억 원을 초과하고 ②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 합계액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
- (국가별보고서) 다음의 ①과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①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 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지배기업으로서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
 - ②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(상당액)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으로서 국외에 최종모회사가 있는 국내 관계회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가. 최종모회사 소재지국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
나. 최종모회사 소재지국과 우리나라 간 국가별보고서가 교환되지 않는 경우
다. 국내관계회사가 「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」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

제출방법

다음의 사이트 접속을 통한 전자제출만 가능합니다.

- (개별·통합기업보고서) 홈택스(www.hometax.go.kr)
- (국가별보고서) AXIS 포털(www.axis.go.kr)

제출기한

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

- * (유의사항) 보고서를 미(거짓)제출한 경우 보고서별로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◆ 「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」제도와 관련한 서식 등 세부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)> 국세정책/제도> 국제조세정보> 국제조세 주요 신고제도>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)를 참고하시기
바라며,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○○지방국세청 법인세과 (☎00-0000-0000)로 문의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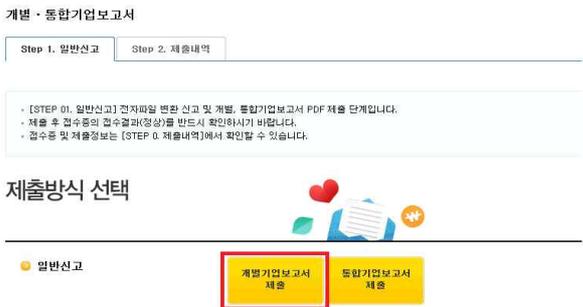
「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」 전자제출 방법

개별·통합기업보고서

1. 국제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접속하여, 로그인 후 메인화면 신고/납부 > 일반신고 > 개별·통합기업보고서 제출



2. '개별기업보고서 제출', 또는 '통합기업보고서 제출' 버튼을 클릭(개별기업보고서 먼저 설명)



3. '개별기업보고서 제출' 클릭 후 전자파일변환(부표) > 변환결과조회(부표) > 'PDF' 파일 제출



4. '통합기업보고서 제출' 클릭 후 기본정보 등 입력 > 'PDF' 파일 제출(부표서식 없음)

국가별보고서

1. AXIS 포털(www.axis.go.kr) 접속 후 메인화면에서 제출법인 등록* 후 로그인**하고, '국가별보고서 제출·수정' 버튼을 클릭

* 법인 공동인증서 필요

** 기존 가입자는 ID, 공동인증서로 바로 로그인 가능



2. '사업연도 목록(국가별보고서)' 화면으로 이동하여 직접입력(엑셀) 또는 OECD 스키마 파일 업로드의 '등록·수정' 버튼을 클릭



3-1. (직접입력(엑셀)) 배분내역, 관계회사 등을 직접 입력하고 '저장' 버튼을 클릭하거나 시스템에서 제공한 입력서식 엑셀을 다운받아 엑셀을 작성하고 엑셀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등록

3-2. (OECD 스키마 파일 업로드) 국가별 보고서 파일업로드 목록에서 '등록'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할 파일을 선택하고 '등록' 버튼을 클릭

